

# 대학원 분자생물학과 운영 내규

제정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분자생물학과와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분자생물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분자생물학과 소속 교수들은 분자생물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 제4조 (취득학점)

-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해야할 학점은 33학점(전공 24학점, 연구지도 9학점) 이상으로 한다. 학위논문을 대체하는 연구논문 제출자는 39학점 (전공 30학점, 연구지도 9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추가 취득하는 전공 6학점은 지도교수의 과목 또는 지정하는 과목으로 한다.
- ②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에서 취득해야할 학점은 45학점(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제5조 (과목개설)**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6조 (교·강사 배정)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 세칙에 따른다.

##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지도 교수는 입학과 동시에 선정하며,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확정한다.

##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학력시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전국규모의 국내학술대회나 국제학술대회 (3개국 이상 참가)에 참가하여 포스터 발표 1회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는 주저자로서 작성한 연구재단등재(후보)지나 그 이상의 논문 게재 실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학력시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로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국제학술지 혹은 SCI 저널(SCI, SCIE)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종합학력시험 실시일 이전까지 게재 확정(게재 승인 편지 인정)되어야 한다.(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 폐지)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 응시해야 하며, 지도교수의 과목은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다.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시행하며,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하며,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이다.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연수)로 인한 면제 신청 시 영어 성적 및 영어권 국가 이외에 추가로 다른 언어 선택이 가능하다. (예시 : 독어, 불어, 중어, 일어, 한문, 노어, 서반아어 중 복수선택 가능)

##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학위논문을 작성하거나, 아래와 같이 연구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연구논문은 학위논문을 대체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2인의 심사위원 (지도교수 + 교내 전공교수)이 심사하며, 합격여부 판정은 심사

위원장이 우선권을 지닌다. 연구논문은 겉표지 하드카바 없이 제본본과 국문파일을 학과에 제출하며,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한 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연구논문은 중앙도서관(국회 및 국립도서관)에 제출하지 않으며, 학위논문 온라인에 등재하지 않는다. 연구논문 심사결과 총 2회 불합격 판정 시 학위논문에 준하여 '수료'로 인정한다. 기타 심사절차는 학위논문과 동일하며 제반 행정사항은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졸업 요건)** 분자생물학과 대학원생이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전국규모의 국내 학술대회나 국제학술대회 (3개국 이상 참가)에 포스터 발표 1회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는 주저자로서 작성한 연구재단등재(후보)지나 그 이상의 논문 게재 실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SCI급 (SCIE 포함) 논문 2편의 게재 실적이 있어야 하며,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이수학기에 따른 교내 규정에 준하여 해당되는 실적을 적용한다. 논문은 실험연구에 의한 논문만을 인정하며 총설(review)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박사학위 과정은 기존의 학위논문 작성만으로 졸업이 가능하며 기타 제반 사항은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14조 (논문심사일정)**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 세칙에 따른다.

### 제15조 (논문심사위원)

-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선정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각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 ②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석사논문 3인, 박사논문 5인으로 구성하며 박사논문 심사위원 중 2인은 외부에서 선정한다.
- ③ 박사과정 연구 proposal 심사위원은 교내외 전문가 5인으로 하며, 학위논문 심사위원과 동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 ④ 논문 지도교수는 반드시 심사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제16조 (논문심사원칙)**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 ① 학위 논문은 실험연구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 ② 학위 논문은 새로운 지식과 발견을 보고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③ 학위 논문은 적절한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④ 학위 논문은 간결하고 정확한 언어로 기술되어야 하며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할 수 있다.

**제17조 (생명윤리규정)** 학위논문이나 연구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에 사용된 주요 실험 재료가 인체에서 유래한 경우 시료의 획득에 윤리적인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칙(2019.01.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개정안)는 2019.02.0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내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